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기창 의원 등 6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9년 11월 26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9일

3. 제안이유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각종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장례 지원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장례 지원을 위한 장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장례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장례식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6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소방공무원 등이 화재·구조·구급 기타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 장례 지원을 통해 희생정신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순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안 제2조는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 ‘소방활동’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는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과 관련된 의무 소방원, 소방관서에 의무종사 중인 사회복지요원, 의용소방대원 등을 장례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소방활동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장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례식의 구분, 주관자, 방법, 장례 비용 등의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영결식, 장례식 비용 지원 근거를 두었으며,
 - 안 제6조는 장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장례식 집행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입법예고('19. 11. 12.~'19. 11. 19.)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 등이 화재·구조·구급 기타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 장례 지원을 통해 희생정신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4조에 따른 장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안 제6조에 따른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제정하여 조례 시행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임.